

DHS 090600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3. 01. 01

개정 2006. 08. 16

개정 2009. 04. 07

주관 : 재무)IR 팀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두산에너지리미티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중요한 내부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회사 임직원의 회사주식 등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법한 공시업무의 수행을 도모하고 임직원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미연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법령,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 이라 한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시행세칙(이하 “공시규정 세칙” 이라한다), 공정공시운영기준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 ① “중요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공시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②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이사, 이사회임원, 감사위원, 직원과 고문, 자문위원, 대리인, 파견직원, 사용인, 기타종업원 을 말한다.
- ③ “공정공시대상정보”라 함은 공시규정 제 12 조의 제 1 항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④ “공정공시정보제공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 12 조의 제 2 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⑤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 12 조의 제 3 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⑥ “주식 등”이라 함은 주권, 신주인수권을표시하는 증서, 전환사채권, 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기타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⑦ “내부자거래”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중요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후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의 주식 등을 매매 또는 기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공시담당 조직 및 운영

제 4 조(공시담당 조직)

①대표이사는 중요정보의 종합관리 및 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는 공시업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이하 “거래소”) 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변경한때에도 또한 같다.

제 5 조(공시책임자 등의 지정)

①중요정보의 종합관리 및 공개를 위하여 공시책임자, 정보관리총괄책임자, 정보관리책임자, 공시담당자, BG 공시담당자를 둔다.

②공시책임자는 등기 또는 집행임원으로 하며, 중요정보의 종합관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정보관리총괄책임자는 경영관리 임원을 “정”으로하고 IR 팀장을 “부”로 선임한다.

④정보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을 “정”으로하고, 차 하위자를 “부”로선임한다.

⑤공시담당자는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 등에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IR 팀의 직원으로 한다.

⑥BG 공시담당자는 BG의 공시해당 업무 여부를 파악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 6 조(공시책임자 등의 역할)

①공시책임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편람」의 내용이 관련법령,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공시규정, 공시규정세칙, 공정공시운영규정 기타 관련규정의 개정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영하고 동 변경내용을 해당 중요정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관리총괄책임자는 공시책임자를 보좌하여 중요정보를 정보관리책임자로부터 통보받아 종합관리하며 공개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개한다.

③정보관리책임자는 중요정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정보관리총괄책임자에게 유선 및 전자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④공시담당자는 정보관리총괄책임자를 보좌하며 정보관리총괄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 등에 회사의 공시 또는 신고의무를 수행한다.

⑤BG 공시담당자는 BG의 업무중 공시해당 여부를 매일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공시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소관부서)

①중요정보의 소관부서는 중요정보관련 업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는 부서로서 첨부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바와 같다.

②정보관리책임자는 당해 중요정보에 관한 발의, 검토, 관련부서 및 기관간의 협의, 이사회결의 등 중요정보의 생성에서 공개에 이르기전까지 중요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중요정보의 발생 및 관리

제 8 조(중요정보의 발생)

①중요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직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은 그 내용을 즉시 정보관리 책임자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고, 정보관리책임자는 그 내용을 신속히 정보관리총괄 책임자에게 전화 및 전자메일로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요정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의 판단에 따르며, 이경우 공시책임자는 판단의 근거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조(중요정보의 관리)

①소관부서 및 당해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중요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보관리책임자는 당해 중요정보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보관, 제출 등에 관한 기록을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중요정보업무의 사외위임 등)

임직원이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사의 외부인과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 제휴, 업무협약, 자문 등의 업무협력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의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중요정보의 공개

제 11 조(중요정보의 공개)

①중요정보의 공개(수시공시, 자진공시, 공정공시 포함)는 대표이사 또는 공시 책임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시책임자 및 정보관리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후 담당 임원 또는 소관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관리책임자는 중요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정보총괄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보고를 받은 정보총괄책임자는 중요정보의 해당여부와 공개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시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회의 보고등의 절차를 거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공개할 정보가 수시공시 등 법정공시 사항(자진공시포함)일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즉시공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공정공시 등)

①회사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과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정공시정보제공자는 기업설명회, 기자회견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정보총괄책임자에게 그 대상정보 및 제공 대상자를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정보를 공개 해서는 아니된다.

③임직원은 공정공시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총괄 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공정공시제공자가 부주의나 과실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이미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공정공시 대상 정보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즉시 정보총괄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3 조(정보제공요청 등)

①언론기관, 투자자 등으로부터 방문(팩스, 전자메일, 또는 전화를 통한 문의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투자정보파악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시책임자 및 정보관리총괄책임자의승인을 득한 후 담당 임원 또는 소관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경우 방문등에 응하는 임직원은 공정공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상담자명, 상담내용, 요청한 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유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은 정보총괄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사 주식 등의 매매

제 14 조(주식 등의 거래 자유)

임직원은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회사의 자회사, 관계 기관및 거래처의 주식 등을 매매 기타 거래할 수가 있다. 다만 제 16 내지 제 18 조의제한 및 의무에 따라야 한다.

제 15 조(주식 등의 거래 금지)

①임직원은 중요정보임을 알게 된 경우 증권거래법시행 규칙 제 36 조에 의한 공개전에는 회사가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은 증권거래법 제 88 조의 2 제 1 항 4 호 및 5 호에 해당하는자와 동조 제 1 항 1 호, 4 호 및 5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날로부터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퇴직자 등이 당사발행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6 조(소관부서 업무담당자 등의 회사주식 등의 거래)

①회사의 소관부서 업무 담당자 등이 회사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요정보의 보유유무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사전에 임원은 공시책임자 에게, 직원은 정보총괄책임자 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보고를 받은 공시책임자 및 정보총괄책임자는 중요정보의 보유 및 공개 유무 등을조사할 수 있다.

③공시책임자와 정보총괄책임자는 중요정보로서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 기타 거래를 금지하여야한다.

제 17 조(이사의 회사 주식등의 거래보고)

①이사가 회사 주식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88 조 제 6 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이사의 회사 주식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 188 조제 6 항, 제 200 조의 2 및 유가증권상장규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주식의 소유 또는 변동과 관련한 보고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8 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 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 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 188 조의 규정에의거하여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칙

제 19 조(자회사등의 내부중요정보등)

①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및 거래처 등(이하 “자회사 등”이라한다)의 미공개내부중요정보를 엄중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직원이 자회사등의 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공개 전에는 당해 자회사 등이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교육)

공시책임자 및 정보책임자는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중요정보관리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중요정보관리의중요성 및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관계법령의 취지를 숙지토록 한다.

제 21 조(증권거래법등의 우선적용)

이 규정에서 정한 규정 중 증권거래법, 동법 시행령, 유가증권발행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공시규정, 공시규정세칙, 공정공시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과 저촉되는 부분이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동법시행령,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관한규정, 공시규정, 공시규정세칙, 공정공시운영기준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 22 조(징계)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3 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4 조(개정)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사유가 발생한 시에는 즉시 위임 전결 규정에 의거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04.0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항목) : 중요정보편람